

# 축 사

2017. 5. 29.(월) 15:00~17:30  
은행회관 2F 국제회의실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 학 군

##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김학균입니다.

전자금융사고시 '금융회사 배상책임 확대방안'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금융거래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전자금융사고와 배상책임의 문제는  
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의 유인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해 주신  
금융연구원 신성환 원장님과 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토론에 참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Ⅱ. 금융회사 배상책임 확대 관련 논의 필요성

여러분,

인터넷뱅킹이 국내에 처음 도입된 1999년 이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전자금융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에는 135조원에 이를 정도로 커졌습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15.12월) 이후  
총 74만개의 비대면 계좌가 개설되고  
제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범 50여일만에  
수신액 3천8백억원을 돌파한 것을 보더라도

이제 금융거래를 위해  
금융회사 지점을 찾아가기보다는  
스마트폰을 꺼내드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자금융거래가 보편화되고  
거래규모가 늘어날수록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배상제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집니다.

'07년 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해킹 등의 금융사고 발생시  
과실이 없더라도 금융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합리적으로 책임을 배분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동법을 운영해 오면서  
전자금융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관련 금융사고와 분쟁도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책임 배분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소비자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 동법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①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등) 위변조 사고, ②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상의 사고, ③ 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

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사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배상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둘째, 동법 시행령과 판례의 태도가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을 폭넓게 인정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축소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셋째, 접근매체 분실·도난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통지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소비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범위를 더욱 축소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소비자가  
법에 열거된 금융사고로 피해입었음을 입증해야 하고,

어렵게 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는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누적된 판례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제 배상책임 문제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EU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무권한거래(unauthorized transaction)로  
피해를 입을 경우

금융회사에 조속히 통지하기만 하면,  
소비자의 피해는 소액으로 제한되고  
금융회사가 나머지 피해를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배상책임 관련 제도 변경은  
전자금융사고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변화시키고,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의 유인체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진국의 제도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우리 전자금융거래 환경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의 경우 거액 이체가 용이(1일 5억원 한도)하고  
다른 금융회사에 이체할 경우 2~3일씩 걸리는  
해외와는 달리 실시간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다양한 금융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때로는 누가 피해자이고 가해자인지  
금융회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비자가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사기 목적으로 발생시킨 거래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EU의 경우에도 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의 책임을 면제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 Ⅲ. 마무리 말씀

---

오늘 세미나에는  
이 문제와 관련한 각 분야  
전문가 여러분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수렴하여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19대 국회에 이어 이번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종걸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금융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